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면전차 운행 관련 규정 정비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3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7463호)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노면전차 운전 면허에서 연습면허 제외(안 제10조제2항) ····· 3

2.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른 통행 (안 제48조제1항) ····· 7

3.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조정 (안 제82조제6항) ····· 11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220746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노면전차[1] 운전 면허에서 연습면허 제외(안 제10조제2항)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여기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생 략)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8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됨.

1) 노면전차 관련 법령 체계 및 국내·외 운영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 】

제80조(운전면허)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임시 면허로서 적성검사,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짐.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1년인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받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됨.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됨.[2)]

2)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현행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노면전차가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 소양 및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인 바[3], 연습운전면허는 본 면허를 받기 전의 임시적 면허로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4]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철도운영사에서 유럽 카테고리 B급 면허(우리나라 제1종·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를 요구하며, 미국은 상업용자동차 운전면허(우리나라 제1종 대형면허와 유사)를 요구하나, 일본은 별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2018. 2. 21. 일부개정(법률 제15404호)된 것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9358호)」이 수정가결된 것임.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 제80조 면허 중 어떤 면허를 갖더라도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11.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 주요국가별 노면전차 운전자 면허 요건 】

구 분	노면전차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영국	O	△ * 철도운영사가 유럽 카테고리 B급 면허 요구 (우리나라 제1종·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
프랑스	X (철도운영사 자체 교육 이수 필수)	
독일	O	
미국	X (철도운영사 자체 교육 이수 필수)	△ * 대부분의 철도운영사에서 상업용자동차 운전면허 요구 (우리나라의 제1종 대형면허와 유사)
일본	O	X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국토교통부 의견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면허로서 효력이 1년에 불과하고 동승자 탑승을 위한 추가 운전자 고용 및 차량 내 별도 공간이 필요하므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한 면허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노면전차 운전자 취득 면허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함.

2.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른 통행 (안 제48조제1항)

현행법은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로 또는 일부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 등[5]의 신호·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

5)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단서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다만,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지시 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신호·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11. (생 략) ②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노면전차의 선로는 철도이면서 동시에 도로에 해당하므로 노면전차의 선로 통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도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은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지시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함.[6)]

6)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와 교차된 도로[7]를 제외하면 교통안전시설 및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8]의 승낙 없이는 노면전차 선로를 출입·통행하는 것이 금지[9]되는 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보행자가 이동하는 경우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간 상충될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면전차 선로 통행과 관련된 법률 해석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 외에도 도로인 노면전차 선로의 통행에 대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건널목을 의미함.

8)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의미함.

9) 현행법 제8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되는데,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하거나 그 중에서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이면서 도로인 노면전차 선로는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수 있어 도로에 준하여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3.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조정 (안 제82조제6항)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사유 중 일부에 대해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제4항)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제1호) 및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제2호)이 이에 해당함.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되는 사유 중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제4항제1호)을 제외하고,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제4항제3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8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제3호----------.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 10가지 사유임. 해당 사유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임.

【 시·도지사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 】

제1항 (1천만원 이하)	
제14호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16호	제7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지시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호	제7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 (500만원 이하)	
제8호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제9호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제외)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제10호	제48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제4항 (100만원 이하)	
제1호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철도종사자
제2호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5항 (50만원 이하)	
제1호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보호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애물 제거 등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2호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한편, 현행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등 4가지임. 이 중 제1호는 2023. 3. 30.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흡연 금지(제40조의3)[10] 규정이 신설되면서 추가되었으며, 제2호 및 제3호는 개정 전의 제1호, 제2호였음. 그런데 당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면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연계하여 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82조제4항 】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 2023. 3. 30. 개정 법률 제193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4항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또한, 제82조제4항제3호(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의 경우 도시철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유인 바, 도시철도의 관리주체인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열차 내 철도종사자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문 신설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참 고	노면전차 규정 체계 및 국내·외 운영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노면전차의 정의

○ 노면전차(路面電車)의 정의는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철도의 한 유형으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의미함.

○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의2),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제반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한 바 있음(2018. 3. 27. 개정).

□ 국내 · 외 현황

○ (국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개이며, 운영 중인 사례는 없음

【 국내 노면전차 운행사업 추진 현황 】

도시	노선명	연장(㎞)	진행상황
서울	위례선	5.4	▸ 공사 중(~'26.上)
대전	대전2호선	36.6	▸ 공사 중(~'28.下)
부산	오륙도선	1.9	▸ 타당성재조사 중
부산	C-Bay Park선	12.8	▸ 기본계획(안) 수립 중
경기	동탄도시철도	34.2	▸ 기본계획 승인·고시
울산	울산1호선	11.6	▸ 기본계획 승인절차 추진중
	울산2호선	13.7	▸ 예타철회, 추후 경제성 확보후 재신청 예정

※ 자료 : 국토교통부

【노면전차의 예시】

<트램 차량>

<위례 트램 105 정거장 조감도>

<트램 예시 (프랑스 파리)>

<트램 예시 (독일 드레스덴)>

※ 자료 : 국토교통부

○ (해외) 全세계 약 **400**개 도시, **2,300**여개 노선 운행 중으로, 탑승인원은 **200~300**명, 최대속도는 **50~70km/h** 수준

국가	운영도시	노선 / 연장	이용자수
프랑스	파리	11개 노선 / 143km	연간 1.94억명
스페인	바르셀로나	6개 노선 / 29.2km	연간 0.23억명
영국	맨체스터	8개 노선 / 101km	연간 0.44억명
체코	프라하	34개 노선 / 518km	연간 3.73억명
중국	난징	2개 노선 / 17.2km	-
대만	카오슝	1개 노선 / 22.1km	연간 336만명
UAE	두바이	1개 노선 / 10.6km	연간 185만명

※ 자료 : 국토교통부

문 의 처
02)6788-5575